지방토론회 주제논문/강원편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지방토론회가 제주와 마산에 이어 춘천에서 지방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85 년 8 월 27 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 지방토론회에서는 차배근 위원(서울대 교수)의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다음은 그 주제논문을 초록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차 배 근
서울대 교수 · 중재위원

「오늘도 리차드 킴블은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고 있다. 」

이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TV 연속극 「도망자」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이다. 「도망자」라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TV 극이지만, 미국의 클리블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샘 쉐퍼드 박사 사건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쉐퍼드 박사는 그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고 12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966 년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그렇다면 쉐퍼드 박사는 왜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던가? 그것은 그 사건 당시에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과 방송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쉐퍼드 박사를 살인자로 몰아세움으로써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리게끔 한 무책임한 보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대학교 국어과,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대학원(철학박사)

□ 저술:「커뮤니케이션학개론」, 「샤회과학연구방법」, 「중국근대언론사」외

□ 현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신문을 위시한 매스미디어가 어떤 형사 사건이나 그 피의자를, 마치 판사가 그것을 다루듯 왈가왈부하는 것을 「신문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법부에서 해야 할 재판을 신문이 대신하는 데에서 비꼬아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매스미디어 가 충분한 소명자료도 없이 단순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섣불리 보도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뒤에 밝혀질 경우, 그 피의자가 받아야만 했던 정신적 피해는 영원히 보상될 수 없으며, 또한 실추되었던 명예도 회복되기 어렵다.

매스미디어는 특히 형사 사건 등에 관하여 보도할 경우, 그 당사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문재판」현상은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바, 신문의 지면을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현장범도 아닌 피의자를 그 인물사진과 함께 「범인 아무개 운운」하고 보도를 하는 것도 그 실례의 하나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록 사후적인 것이기는 하지란, 쉐퍼드박사 사건 이후, 각주에서 「신문재판」으로부터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하나로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서둘러 입법화하였다. 매스미디어가 어떤 형사 사건이나 그 피고인에 대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그 영향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을 유예하고 그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신문재판」때문에 살인자로 몰려서 정치 없이 쫓겨 다녀야만 하는

TV 극 「도망자」의 주인공, 리차드 킴블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매스미디어-그것은 흔히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야누스」에 비유되고 있다. 또한 때로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매스미디어는 정기능(순기능)과 함께 역기능(dysfunction)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① 정기능과 ② 역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냐 또는 비의도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느냐에 따라서 ③ 현재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④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기능으로는 뉴스보도를 통한 자연적 인공적 재해에 대한 경고기능, 사회규범의 강화기능, 생활정보의 제공기능, 지위부여기능. 문화촉진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 반면 이러한 정기능에 대한 역기능(또는 잠재적 역기능)으로서는 사회적 안정의 위협, 사회혼란의 조장, 불안감의 조성, 개인들의 비관능력의 약화, 수동적 행동의 조장, 문화발전의 저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등과 사회의 미풍양속의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매스미디어가 그 역기능을 극소화하고 그 정기능만을 살펴서 맡은바 언론의 올바른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그 해결방법이 간단하면서도 또한 지극히 어렵다고 하겠는데 만약 언론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그리고 건전한 윤리관만 갖춘다면 그 역기능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라는 제도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언론 자체에서도 그 역기능을 스스로 인식,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 내지는 통제(Self-Control)로서는 ① 제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의 제정 및 준수를 통한 것 ③ 재교육과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한 언론인의 전문화와 자질향상을 들 수 있다.

언론계가 그 맡은 바 정기능을 통한 많은 업적 내지 공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언론은 아직도 몇 가지 개선점이 없지 않은 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인 것이 곧 개인, 특히 소시민의 법익에 대한 경시풍토라고 보겠다.

우리 나라를 포함, 모든 국가에 서는 언론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개인적 · 사회적 및 국가적 법익은 언론에서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법익들은 그에 의한 법률이 없더라도 언론이 스스로 보호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겠다. 그것은 언론이 추구하는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를 보면 정부의 통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회적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언론관계법들은 비교적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언론은 오히려 언론이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할 개인 특히 나약한 소시민 법익에 대해서는 이를 경시, 스스로 침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인상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언론은 그들이 신문윤리강령 제 2 장 「신문의 책임」에서 「신문은 항상 정의에 대담하여 부정과 대결함에 용감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 그 호소를 대신함으로써 그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고 제 5 장「타인의 명예와 자유」에서는 「신문은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자인 개인-특히 소시민의 권리와 법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을까?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로 우리의 언론은 사회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평등의 개념에서 국민 개개인을 대하기 보다는 상하의 개념에서 국민을 향도하고 교육하고 계몽한다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서 한국언론은 이론적으로는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언론활동에서는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어서 정치권력에 대응할 때에는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해서 언론자유를 활용하면서도 실제로 국민을 대할 때에는 마치 정치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로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경향과 그에 따른 과대경쟁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사회면 기사들의 경우에 그것을 「범죄 · 성 · 돈」(wrong-doing, woman, wampun)이라는 사건뉴스 공식에 맞추게 됨으로써, 자연히 개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셋째로는 국면 개개인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는데, 우리의 국민들은 아직도 시민의식이나 권리의식이 부족하여 언론으로부터 권리의 침해를 당하고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우리보다 선진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서, 언론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게 되면 가차없이 법에 호소, 심지어는 어마 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시민들로 결성된 소위 「매스미디어에 대한 파수견 그룹(watch-dog group)들, 예컨대 전국시민방송위원회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전국시민협회 등의 이른바 매스미디어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있어서, 마치 언론이 정부를 감시 하듯이, 시민은 매스미디어를 감시, 그 맡은 바 정기능만을 하도록 바람직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촉구시키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언론은, 정부보다 시민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보도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혹시 시민들로부터 제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문변호사를 고용, 문제성의 소지가 있는 기사는 사전에 심의를 하게 만들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감히 언론의 역기능에 도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에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들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땅하고도 손쉬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법에 호소할 길은 있었지만, 소시민으로서는 소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측에서 명예회복에 필요한 행동(정정보도 · 사과 등)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제소를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개인들의 법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언론의 역기능에 도전하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언론이 국민 개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는 않으나, 이를 빙자해서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면, 비록 그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라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언론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측에서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를 빙자해서 애꿎은 소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인 바, 그것은 진정한 언론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없이, 그 맡은 바 사명만을 수행케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제도는 법적 절차이전에 언론과 그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호소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으로부터 침해 받은 피해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그 소송절차가 번잡한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금전상 또는 시간상 쌍방에 손해를 가져오는데 비해 이러한 쌍방간의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정정보도를 통해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제도가 곧 언론중재제도이며,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